

부산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나5433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해

담당변호사 문주호, 박상욱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김창수

변 론 종 결 2021. 5. 26.

판 결 선 고 2021. 6. 9.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20가단315839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의료법인 D 사이에 별지 ‘취소할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5. 6. 22.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5,134,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134,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료법인 D(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IF병원에서 1990. 3. 12.부터 2017. 3.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으로서, 소외 재단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채권 및 퇴직금 채권이 있다.

나. 소외 재단은 2015. 6. 22. 피고로부터 3,000,000,000원을 이율 연 6.7%로 차용하되 원리금 합계 3,319,932,600원을 매월 92,220,350원씩 36개월에 걸쳐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위 대출채무의 담보로 소외 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수령할 요양급여비용 등 일체의 채권 중 100,000,000,000원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5. 6. 24.경 건보공단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소외 재단에 대하여 2017. 7. 14. 부산지방법원 2017하합1003호로 파산결정이 선고되었고, 이후 소외 재단이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8. 4. 17.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져 2018. 4. 2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원고에 대한 채무자인 소외 재단은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었거나 이전의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외 재단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위 양수 채권의 수령금을 가액 배상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소외 재단에 대하여 125,134,800원의 임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다. 소외 재단은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하여 피고에게 허위채권 96,680,067,400원을 양도한 것인바, 이는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소외 재단은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월 92,220,35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소외 재단에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하여 소외 재단의 자력을 감소시킨 것도 아니다.

(나) 소외 재단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신규자금을 융통받았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설령 소외 재단의 이 사건 채권양도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소외 재단에 3,0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월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요양급여 중 소외 재단과 사이에 약정된 원리금 상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소외 재단에 지급하였다. 일부 금액의 경우, 이 사건 대출약정이 정한 바에 따라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유보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는 소외 재단의 강제집행면탈에 가공한 것이거나 원고의 채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인 2015. 6. 22.경 원고가 소외 재단의 근로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부터 소외 재단과 장기간에 걸쳐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어 임금 및 퇴직금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근로계약에 기하여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미지급 임금 채권 및 퇴직금 채권도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여부

가) 소외 재단의 무자력 상태 여부

(1) 원고의 주장

소외 재단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2015. 6. 22. 시점), 이미 퇴직한 직원들 또는 조만간 퇴직할 직원들에 대하여 막대한 액수의 퇴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에도, 무려 1,0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

(2) 판단

(가)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11408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재단이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퇴직금채무 중, ① 2015. 1. 1.부터 2015. 6. 22.까지 퇴직한 직원들에 대한 755,691,325원, ② 2015. 6. 23.부터 2015. 12. 31.까지 퇴직한 직원들에 대한 1,558,338,246원, ③ 2016. 1. 1.부터 2017. 2. 28.까지 퇴직한 직원들에 대한 12,164,544,910원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후 2017. 7. 14.까지 퇴직한 직원들에게도 2015. 6. 22. 시점으로 9,223,136,875원 상당의 퇴직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다가 소외 재단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무렵 상당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던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 주장처럼 소외 재단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해 그러한 무자력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는지 의심해 볼 수 있다.

(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외 재단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① 금정세무서에 제출되어 있던 소외 재단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소외 재단은 2014. 12. 31. 현재 자산총계 92,006,037,824원(그 중 비유동자산은 86,494,466,307원), 부채총계 81,358,338,266원, 자본총계 10,647,699,558원이고, 2015. 12. 31. 현재 자산총계 92,038,441,694원(그 중 비유동자산은 86,353,103,517원), 부채총계 80,843,572,354원, 자본총계 11,194,869,340원으로, 2015년말까지도 여전히 부채총계를 넘는 비유동자산을 보유하면서 자본잠식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재산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② ㉠ 2013. 12. 31. 기준 소외 재단의 퇴직급여충당부채는 24,076,580,000원, ㉡ 2014. 12. 31. 기준 소외 재단의 퇴직급여충당부채는 22,165,750,770원, ㉢ 2015. 12. 31. 기준 소외 재단의

퇴직급여충당부채는 18,044,646,017원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채무액 중 상당 부분은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어서, 원고 주장 금액 전부를 단순히 소극재산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소외 재단의 재산상태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③ 소외 재단에 대한 파산사건 처리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인 2016년경에 이르러서야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 사건 채권양도 기준일에는 여전히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채권양도 대상 채권액 1,000억 원은 장래채권으로서 소외 재단이 이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소외 재단의 적극재산이 곧바로 감소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피고가 수령하기로 한 금액은 30억 원 대출에 대한 매달 원리금 92,220,350원씩 36개월의 합계 3,319,932,600원(=92,220,350원 × 36)이 전부이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액 중 매달 위 92,220,350원을 초과하는 돈은 대부분 소외 재단으로 지급되었는데도, 위 1,000억 원 전액을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처분하였다고 간주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소외 재단의 사해의사 여부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8832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18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7217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을 제2 내지 5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14, 제16, 17호증의 각 1, 2,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재단으로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장래 변제자력이 감소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소외 재단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인 2015. 6. 22.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② 소외 재단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무렵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직원 550여명이 임금 50%를 반납하는 등 상당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는데, 이 사건 30억 대출은 그러한 재정상태와 영업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직원 구조조정을 위한 퇴직금(20억 원) 및 노인병동 증축 투자금(10억 원) 용도로 피고의 대출심사를 거쳐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 ③ 소외 재단은 위와 같은 목적에서 피고로부터 긴급히 30억 원의 자금을 36개월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장래채권을 양도하였다.
- ④ 소외 재단이 피고에게 양도한 장래채권 금액 1,000억 원은 이 사건 대출약정상 상환기간이 36개월임을 고려하여 40개월간의 담보를 산정(=2,500,000,000원 × 40개월)한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위 금액 전체를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 ⑤ 소외 재단은 피고에게 양도한 장래채권 중 매월 92,220,350원 상당의 원리금 상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받기로 약정했고, 실제로 피고는 위 정산을 이행하였다.

(3)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소외 재단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이상,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선의의 수익자 항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소외 재단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통하여 건보공단에 대한 장래 채권 중 100,000,000,000원 상당을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소외 재단이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외 재단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강제집행면탈이라는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묻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민수, 판사 신민석, 판사 양우창

별지

취소할 채권의 표시

금 125,134,800원

피고 가

의료법인

으로부터 채권 양도 받은 제3채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111471-0008863 : 서울 마포구 독막로 311(염리동)]에게 청구할 국민건강보

험급여비채권 중 위 합계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